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의회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월 일

조례 개정 방침결정문

1. 조례명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 국내·외 여비 지급표(별표 1, 2)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별표 1의 국내여비 및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 붙임

7. 예산조치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을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의원 의”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재지 내에서 의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을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으로, “충청북도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를 “청주시내”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별표 1 비고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지급 기준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등급	숙박비	식비 (1일당)	준비금
의장· 부의장	중간 정액		40	가 나 다 라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실비지급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의 원	중간 정액		35	가 나 다 라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u></p>	<p><u>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u>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의회의원</u> ----- ----- -----.</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u>의원의</u>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u>충청북도공무원보수지급일</u>에 지급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u>충청북도</u> <u>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u>----- ----- -----.</p>
<p>제6조(<u>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u>) ① <u>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의원</u>의 출장여비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서 <u>“의회사무실 소</u></p>	<p>제6조(<u>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u> 등 여비지급) ① <u>충청북도의회</u> (<u>이하 “의회” 라 한다</u>) <u>소재지내에서 의원의</u> ----- ----- ② ----- <u>“의회 소재지 내에</u></p>

재지 내에서의 출장” 이라 함은
충청북도의회사무실이 있는 청
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
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8조 (생 략)

<신 설>

서의 출장” ----- 청주
시내-----

-----.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급상
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
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 표】

[별표 1]

< 현 행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p>비고 : 1.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p> <p>2.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개 정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실 비	20,000	실 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p>비고 : 1. (생 략)</p> <p>2. <삭 제></p>						

[별표 2]

< 현 행 >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기준 구 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40	가등급 205	가등급 133	150	180	210
			나등급 149	나등급 99			
			다등급 118	다등급 72			
			라등급 100	라등급 61			
의 원	1등 정액	35	가등급 166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92	다등급 58			
			라등급 79	라등급 49			
비고 : 1. ~ 2. (생 략)							

< 개 정 >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기준 구 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등급	숙박비 (1야당)	식 비 (1야당)	준 비 금
의 장 부의장	중간 정액	40	가	실비(상한액: 282)	133	실비 지급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나	실비(상한액: 207)	99	
			다	실비(상한액: 162)	72	
			라	실비(상한액: 108)	61	
의 원	중간 정액	35	가	실비(상한액: 223)	107	여행자 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나	실비(상한액: 160)	78	
			다	실비(상한액: 130)	58	
			라	실비(상한액: 85)	49	
비고 : 1. ~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개정 2017. 1. 10.>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p>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p>
제1호	<p>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분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p>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 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국외 여비 지급표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 (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 (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 (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 (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 (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 (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 (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 (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 (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 (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 (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 (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 (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 (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 (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 (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 (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 (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 (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 (상한액: 81)	37
6. 별표 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26	실비 (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 (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 (상한액: 90)	37
	라	26	실비 (상한액: 7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 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2) 남 · 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 ·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2017공무원 보수 규정

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1)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 >

항 공 운 임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2.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항목 : 4개 항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